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 수립〉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68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 검토의견	3
1.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 수립 등	3
2.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9
※ 참고자료	13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 : 2024. 8. 13.

다. 회부일 : 2024. 8. 14.

2. 제안이유

1987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외 타 시설 등에 비해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105주년을 맞이하여 근대 역사 교육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

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가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Ⅲ. 검토의견

1.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 수립 등

-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에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추가하고,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한편,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신 설>

<신 설>

높이는 데에-----

-----.

제6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3(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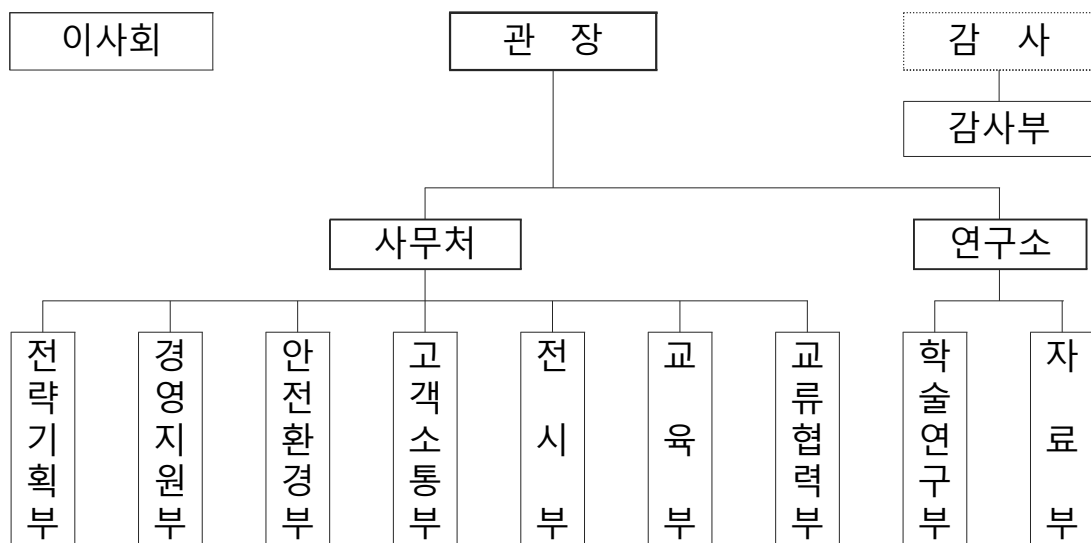
1. 독립기념관 관람객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독립기념관 외국인 관람객 유치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립기념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교통 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립기념관 이용 활

	<u>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	--

□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연구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되었음.

○ 현재 독립기념관은 총 10부(사무처 7부, 연구소 2부, 감사부)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은 309억원, 정원은 141명임.¹⁾

[표 1] 독립기념관 기구표



자료: 국가보훈부

1) [참고 1] 독립기념관 일반현황(p.13)

- 또한, 1987년 개관 이후 총 관람인원은 6,000만명 이상으로,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관람인원이 크게 감소한 이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관람인원은 160만 1,941명으로 과거 관람인원 수준을 회복하였음.²⁾

[표 2] 연도별 독립기념관 관람인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관람인원 수 (전년 대비)	1,795,983 (10.07)	594,519 (△66.9)	1,138,569 (91.51)	1,370,379 (20.36)	1,601,941 (16.90)	1,123,175 (14.5*)

* 2024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독립기념관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비해 미흡하여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독립기념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참고 2] 독립기념관 관람객 현황(p.15)

□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³⁾ 접근성 향상 등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이 시행된다면 독립기념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인프라 확충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필요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독립기념관의 특성 및 관련 현행 제도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없이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⁵⁾

○ 둘째, 현재 독립기념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⁶⁾에 따라

3) 독립기념관은 대중교통 이용 시 역 또는 터미널부터 20분 이상을 이동하여야 함(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의3제3항).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기관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 동 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것이고, 독립기념관은 2023년에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5회계연도 이상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국가보훈부에 제출하고 있고,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이 제출한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독립기념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므로,⁷⁾⁸⁾ 활성화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방안 이전에, 기존 중장기 경영목표를 활용하고 국가보훈부가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⁹⁾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이용 증진 필요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특성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의 신설 필요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독립기념관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부와 협의하여 독립기념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경영목표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¹⁰⁾ 독립기념관의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변경되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위 조항들을 준용하여 독립기념관을 감독하고 있음.

7) [참고 3] 독립기념관 중장기 경영목표(2024~2028년)(p.16)

8) <2023년도 독립기념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국가보훈부)>

https://www.alio.go.kr/item/itemBoardB1230.do?disclosureNo=2024092002873330&apbaId=C0065&nowcode=B1230&reportFormNo=B1230&table_name=COMM_BOARD&idx_name=BOARD_NO&idx=3321261&reportGbn=N&bid_type=0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을 준용하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의 장에게,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각각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0) [참고 4]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p.17)

2.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¹¹⁾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¹²⁾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이용

11) 「독립기념관법」 제13조(보조금 및 출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기념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에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강화될 경우,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등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인프라 설치가 장려될 수 있고, 관람객의 이용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독립기념관법」은 제1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하여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¹³⁾,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만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은 현행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하는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독립기념관법」 제6조(업무) ① 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독립기념관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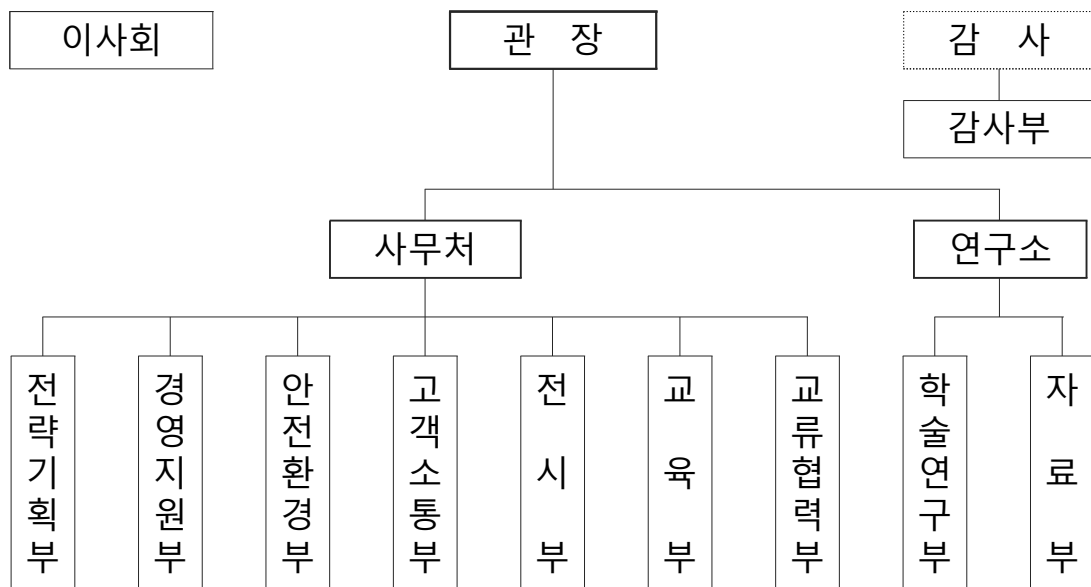
설립목적

- ❖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연구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이바지함

연 혁

- '86. 5. 9 독립기념관법 제정(법률 제3820호)
- '87. 8. 15 준공 및 개관
- '95. 8. 15 통일염원의 동산 조성
- '05. 5. 18 소관부처 이관(국가보훈부)
- '08. 1. 1 관람 무료화 시행

기 구 : 10부(사무처 7부, 연구소 2부, 감사부)



□ 정원 및 현원

(‘24. 8. 31.)

구분	계	임원	별정직	학예직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공무직	별도직군
정원	141	1	2	35	17	46	6	34	3
현원	137.6	1	2	34	17	47	6	30.6	4

※ 기간제 15명(독립운동가 자료발굴 TF팀 7명, 호남호국기념관 8명) 제외

※ 휴직자 4.6명(사무직 1명, 학예직 2명, 공무직 1.6명) 포함

□ 2024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세입			세출		
예산과목	금액	비율	예산과목	금액	비율
국고보조금	282	91%	사업비	192	62%
			경상비	114	37%
자체수입	27	9%	예비비	3	1%
합계	309	100%	합계	309	100%

□ 관람인원 현황

(‘24. 8. 31.)

○ ‘24년 관람객 인원 : 1,123,175명(전년 동기간 대비 14.5% ↑)

○ ‘23년 관람객 인원 : 1,601,941명

○ 개관(‘87.8.15)이후 총 관람인원 : 60,145,721명

참고 2

독립기념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23. 12. 31)

구분	유료입장			무료입장	합계	전년대비	외국인
	개인	단체	소계				
1987년	2,179,601	506,354	2,685,955	3,940,000	6,625,955	(8.15개관)	별도 통계 없음
1988년	2,880,668	1,260,761	4,141,429	100,000	4,241,429	-	
1989년	1,519,367	1,151,299	2,670,666	130,000	2,800,666	-33.97%	
1990년	970,356	985,520	1,955,876	80,000	2,035,876	-27.31%	
1991년	972,690	821,713	1,794,403	75,515	1,869,918	-8.15%	11,874
1992년	891,810	750,903	1,642,713	83,793	1,726,506	-7.67%	15,913
1993년	963,396	625,167	1,588,563	86,815	1,675,378	-2.96%	20,051
1994년	789,510	510,724	1,300,234	156,885	1,457,119	-13.03%	26,833
1995년	836,435	517,119	1,353,554	130,644	1,484,198	1.86%	28,105
1996년	753,251	532,073	1,285,324	127,033	1,412,357	-4.84%	29,571
1997년	677,145	438,066	1,115,211	158,762	1,273,973	-9.80%	33,375
1998년	411,726	392,105	803,831	114,846	918,677	-27.89%	27,808
1999년	424,076	493,816	917,892	173,547	1,091,439	18.81%	28,011
2000년	417,083	440,876	857,959	230,604	1,088,563	-0.26%	26,619
2001년	354,588	402,388	756,976	291,199	1,048,175	-3.71%	15,151
2002년	306,149	392,223	698,372	325,376	1,023,748	-2.33%	21,979
2003년	303,290	398,261	701,551	306,328	1,007,879	-1.55%	12,150
2004년	279,132	359,666	638,798	310,640	949,438	-5.80%	20,152
2005년	306,138	366,204	672,342	371,297	1,043,639	9.92%	17,632
2006년	274,226	309,411	583,637	394,429	978,066	-6.29%	15,585
2007년	278,598	285,540	564,138	437,121	1,001,259	2.37%	14,945
2008년	무료화			1,218,654	1,218,654	21.7%	14,372
2009년				1,141,016	1,141,016	-6.37%	15,083
2010년				1,358,245	1,358,245	19%	19,444
2011년				1,447,626	1,447,626	6.58%	12,332
2012년				1,459,992	1,459,992	0.9%	17,801
2013년				1,491,114	1,491,114	2.1%	10,980
2014년				1,463,722	1,463,722	-1.87%	10,874
2015년				1,401,680	1,401,680	-4.24%	15,168
2016년				1,519,931	1,519,931	8.44%	17,068
2017년				1,633,175	1,633,175	7.45%	17,902
2018년				1,631,742	1,631,742	-0.09%	14,460
2019년				1,795,983	1,795,983	10.07%	15,461
2020년				594,519	594,519	-66.9%	통계없음
2021년				1,138,569	1,138,569	91.51%	
2022년				1,370,379	1,370,379	20.36%	
2023년				1,601,941	1,601,941	16.90%	
계	16,789,235	11,940,189	28,729,424	30,293,122	59,022,546	-	-

참고 3

독립기념관 중장기 경영목표(2024~2028년)

□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2024 ~ 2028년)



참고 4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1. 독립운동 고유 전시·교육 콘텐츠 활성화

□ 전시관 운영 현황

- 상설전시관(7개), 체험관, 홍보관, MR독립영상관

전시관	전시면적(m ²)	전시주제	전시자료(점)	비고
제1전시관 (겨레의뿌리)	3,478 (1,054평)	• 선사시대~조선후기 시대 • 불굴의 의지와 대외항쟁	245	교체예정
제2전시관 (겨레의시련)	2,614 (792평)	•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	207	재개관 (‘20.05.06.)
제3전시관 (겨레의 함성)	1,475 (447평)	• 3.1운동 • 3.1운동 이후 국내 대중투쟁	118	재개관 (‘19.03.01.)
제4전시관 (평화누리)	1,491 (451평)	• 자유·정의·평화를 지향한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	-	재개관 (‘17.08.15.)
제5전시관 (나라되찾기)	2,534 (768평)	• 독립전쟁 • 한국광복군 • 의열투쟁 • 해외무장투쟁	185	교체예정
제6전시관 (새로운나라)	2,534 (768평)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광복 후 대한민국	158	재개관 (‘22.9.17.)
제7전시관 (특별기획 전시실)	3,554 (1,077평)	• 특별기획전시 • 콘텐츠 체험존(실감콘텐츠 등)	-	전시교체 중
함께하는독립운동 체험관 (겨레의 집 내)	1,719 (521평)	• 국가상징물 체험(영·유아존) • 독립운동사 체험(청소년, 일반)	-	개관 (‘19.02.01.)
홍보관 (겨레의 집 내)	657 (199평)	• 독립기념관 발자취 등	-	개관 (‘17.08.15.)
MR독립영상관	1,054 (319평)	• 4D영상 돌기의 비행 등 9편 • 독립전쟁 주제(MR, VR)	-	재개관 (‘21.08.15.)

□ 특별기획전 개최

- 독립운동시기 문화예술展 「독립의 노래, 저항의 무대」
- 광복 1년 전,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 「1944, 독립을 기다리며」
- 국민통합 기여를 위한 「기증자료로 본 국난극복·국가발전사」
- 세계 독립운동 교류 공감전시 「독립정신 세계로 퍼지다」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성화

- 대상별 맞춤교육 강화로 독립운동사 이해 제고
 - 국내 교육과정 연계 어린이·청소년 맞춤형 교육 효용성 강화
 - 관람객 체험형 주말·방학 프로그램 확대로 역사의식 확산
- 독립운동 특성화교육 내실화
 - 독립군의 활동과 일상생활 체험, 초·중등 교육 및 강사파견
 - 독도학교 운영을 통한 독도의 역사와 자연, 체험활동
 - 임시정부를 주제로 문화예술·토론과 융합한 체험교육
- 전문가 연수 확대 및 포용적 사회 기반 교육 강화
 - 상시 교원직무연수 및 역사교육 전문가 연수 확대
 - 외국인, 장애인, 보훈가족 등 사회 포용적 교육 활성화

2. 연구사업 본연의 기능 강화로 독립운동 가치 창출

□ 가치 중심의 학술연구 강화

- 한국독립운동사 관련 심화연구·기획연구 및 논문 발표
- 학술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논문집 및 총서 발간
-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및 웹사전 편찬
- 잊혀진 독립운동가 자료 발굴 및 포상 추천
- 정기 및 계기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발굴·조사 사업

□ 독립운동사 지식정보 강화(자료수집·보존)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독립운동사 자료 수집 및 분석
- 독립운동 자료보존 및 관리 강화
- 독립운동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화 및 활용으로 가치 축적

3.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관람서비스 제공

□ 역사·문화 프로그램 및 국민의 방문 활성화

- 역사·문화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독립운동 기념 문화행사 확대 및 브랜드화(3·1절, 광복절)
 - 야간개장 및 역사·문화 프로그램 개최(K-컬처 박람회 등)
-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고객서비스로 재방문 증대
 - 국민 의견을 반영한 신규 해설(야간특화) 운영 및 만족도 제고

□ 수요자 중심 홍보·마케팅 강화 및 실감형 콘텐츠 확대

- 내외부 매체와 대외협력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
 - SNS 콘텐츠 다양화 및 최신 트렌드 반영으로 이미지 제고
 -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휴게소), (주)BGF리테일 등 홍보 협업
- 디지털 실감형 콘텐츠 구축 및 활용
 - 초고화질 VR촬영 기술로 야외전시관 및 특별기획전 구축
 - 기관 정체성을 담은 거래의탑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개발

4. 독립정신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고도화

□ 국내외 기념관 네트워크 강화

- 국내외 협력 활성화
 - 국외 독립운동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전시·콘텐츠 지원
 - 국내 현충시설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공동전·순회전 등)
- 국제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주제 발굴 및 역량 강화

□ 교류협력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유관기관 협력 공동기획전 강화 및 찾아가는 전시 개최
-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학교 현장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 콘텐츠 지원 확대(배움상자)
 - 국외 교육 협력망을 통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강화(한글학교 등)